의안 번호	43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의 원 : 전홍표・감규상・권순재・김원일・류성국 문순규・박연정・박현재・배명갑・백승규 변보미・서명일・이우완・장병운・지상록 진형익・차중현・홍용채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최근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으로 피해자가 보호시설 또는 긴급피난처 등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어 입소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피해자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및 진료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반려동물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4조의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계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가정폭력피해자 등의 반려동물 임시보호 지원)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의 사유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긴급피난처와 같은 임시 거처에 입소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에서 그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및 진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반려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가정폭력피해자 등의 반려동물 임시보호 지원)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의 사유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긴급피난처와 같은 임시 거처에 입소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에서 그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및 진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보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반려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참고 **관계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인가기준(認可基準)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2.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분양
5.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7.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8.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⑥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또는 시·군·구에 운영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제34조제1항제3호의 동물을 반환받으려는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참고 **현행 조례**

■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과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 존중 의식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창원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창원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동물 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하거나 용역할 수 있다.

제4조(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의 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창원시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이하 "문화복합공간"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문화복합공간은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117 일원에 둔다.

제5조(기능 및 시설) ① 문화복합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의 제공
2. 반려동물의 보호, 치료, 관리 및 입양
3. 반려동물의 행동교정, 양육 및 보호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5. 반려동물 관련 문화 체험 및 홍보 등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행사 개최
6. 구조된 유실·유기동물 등의 보호 및 관리
7.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질병 예방 및 치료
8. 반려동물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반려동물과의 다목적 활동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문화복합공간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② 문화복합공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놀이터
2. 산책로
3. 문화센터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5. 애견카페, 애견미용실 등 편의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휴관일) ① 문화복합공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물보호센터는 제외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복합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 해당 휴관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창원시 누리집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① 문화복합공간의 운영시간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이 문화복합공간의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운영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창원시 누리집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8조(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수강 등) ①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이하 “수강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강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최소한의 금액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등) 시장은 문화복합공간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동물 또는 맹견을 동반하는 경우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단, 놀이터는 제외한다)
4. 문화복합공간의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시장은 문화복합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창원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이하 “동물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5조제3항에 관한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위하여 동물보호담당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1. 학사 이상의 동물 관련 전공자
2. 동물의 사육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축산부서 소속 공무원

제12조(동물의 반환 및 분양 등) ①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그 동물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동물의 보호조치를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서 희망하는 경우 그 민간단체 등에서 보호조치 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중인 민간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된 동물의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등에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보호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동물보호센터 노동자 지원 등) ① 시장은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동물보호센터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위험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노동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동물의 죽음과 질병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 노동자 채용 시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동물보호센터 자원봉사) ①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려는 자는 봉사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자원봉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원봉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에게 전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자원봉사 참여 인원이 1일 10명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자원봉사의 효율성이 없거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동물등록대행자 지정·관리) ① 시장은 등록업무의 대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판독기 등을 갖추고 있는 자

②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동물등록대행자가 시정을 하지 않으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시장은 동물등록대행자가 폐업 등으로 등록업무의 대행이 불가한 경우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경 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변경,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등록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등록대행 수수료는 제외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감면 사유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분양 또는 기증받은 유실·유기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재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50퍼센트
6. 중성화 수술이 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30퍼센트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20퍼센트(3마리째부터 적용)

제17조(창원시 동물 보호·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동물 보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보호, 사례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 보호·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문화복합공간 운영 및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5. 문화복합공간의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동물 보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물 보호 및 복지 업무 담당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3. 영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법 제90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명예동물보호관
5. 반려동물 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6. 동물 보호·복지·교육·일자리·관광·문화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동물 보호 및 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에는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길고양이 포획을 해야 하며, 불법 포획과 도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1. 중성화 수술
2. 치료 목적의 구조
3. 그 밖에 시장이 길고양이 포획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길고양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다치거나 3개월 미만의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⑤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와 그 지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길고양이 포획·방사 사업을 동물보호단체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를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관리해야 한다.

⑦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주방사 계획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시장은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활동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소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⑨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⑩ 시장은 길고양이 공공급식소의 관리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반려동물 보호 사업 등)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1. 반려동물 학대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지도 강화
2. 시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반려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
3. 반려동물을 위한 문화공간(놀이터 및 산책로를 포함한다) 설치·운영 및 문화행사 개최

제25조(응급동물병원 지정·운영) ① 시장은 피학대동물의 보호조치 및 유실·유기동물의 응급진료를 위하여 응급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 제

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피학대동물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민간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동물병원을 지정·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응급동물병원 지정·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반려동물 교육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시민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